

# 한정후견인 변경 청 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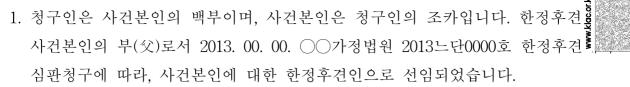
청 구 인 O O (주민등록번호)
(사건본인의 백부) 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로 OO
주소 OO시 OO구 OO로 OO(OO동)
전화 OOO - OOO

####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

## 청 구 취 지

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□□□를 ○○○(주민번호 : 195000 - 0000000, 주소 : ○ 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)로 변경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

- 2. 그런데, 한정후견인 □□□은 2000. 00. 00.자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서 사건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으며, 그 결과 사건본인의 개호와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한정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.
- 3. 한편, 청구인이 한정후견인 □□□를 대신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. 회사원으로 매월 000원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적합하며, 또한 사건본인도 청구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
- 4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변경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### 첨 부 서 류

1. 기본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)각 1통1. 가족관계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)각 1통1. 사건본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)1통1. 진술서(한정후견인 가출사실확인)1통1. 진술인의 인감증명서1통1. 주민등록등・초본(청구인, 사건본인)각 1통

2000년 0월 0일

위청구인 ○ ○ (인)

#### ○ ○ 가 정 법 원 귀중

| 제출법원         | 사건본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   |
|--------------|--|
| 청구권자         | · 민법 제777조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, 피후견인, 후견감독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(민법 940조)   |
| 제출부수         | 신청서 1부 관련 법 규  |
| 불복절차<br>및 기간 | • 한정후견변경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(가사소<br>송법 제43조, 가사소송규칙 제36조)<br>• 불복기간 :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(가사소송법 제43<br>조 제5항, 가사소송규칙 제31조) |
| 비 용          | ・인지액 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<br>・송달료 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  |
| 후견인<br>결격사유  | 민법 제937조   |

※ 후견인의 결격사유 (민법 제937조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

- 1. 미성년자
- 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- 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- 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형기) 중에 있는 사람
- 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- 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- 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- 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